

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6. .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조항 변경(제2조)

- 법 제17조의8 → 법 제24조 (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)
- 법 제18조의2 → 법 제30조 (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)
-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→ 법 제29조 (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)

나. 위반자에 대한 조치 : 삭제(제2조제3항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”를 “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17조의8”를 “법 제2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법 제18조의2”를 “법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

제2조제4항 중 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”를 “법 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민원봉사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민원봉사과장 정 신 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민원담당 김 용 속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전 성 희 860-213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</p> <p>1. <u>법 제17조의8에</u>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법 제18조의2에</u>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</u></p> <p>4. <u>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</u>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에 관한 사항</p> <p>중 시에 접수된 사항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</p> <p>1. <u>법 제24조</u> ----- -----</p> <p>2. <u>법 제30조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<삭 제></u></p> <p>4. <u>법 제29조</u> ----- ----- -----</p>